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572 |
|------|-----|

2015. 6. 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5. 6. 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류경기)

가. 제안이유

- 시·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 분야를 보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안전수요 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적기 보강

나. 주요내용

- 실행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
 - ‘도시안전본부’의 시 재난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총괄기능을 확대하여 ‘안전총괄본부’로 재편
 - 전문적인 치수안전 예방 및 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물순환안전국’ 신설
-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기능보강·신설
 - 하수처리 공정, 하수재이용 등 하수분야 연구 강화를 위한 ‘서울물연구원’(≡ 상수도연구원) 기능 보강
 - 전문적인 과학기술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사업소) 신설
 -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및 시민의 권익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신설
 - 시정운영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일자리기획단, 마곡사업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시·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¹⁾을 반영해 실행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직 보강을 통해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총괄 기능을 보강해 기존의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개편하고, 수방대책과 하수·하천 등물관리를 총괄하는 물순환안전국을 독립·신설하는 등 서울시(이하 “시”) 실·본부·국을 현행 ‘1실 8본부 7국 1합의제행정기관’에서 ‘1실 8본부 8국 2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 구체적인 조직체계 구성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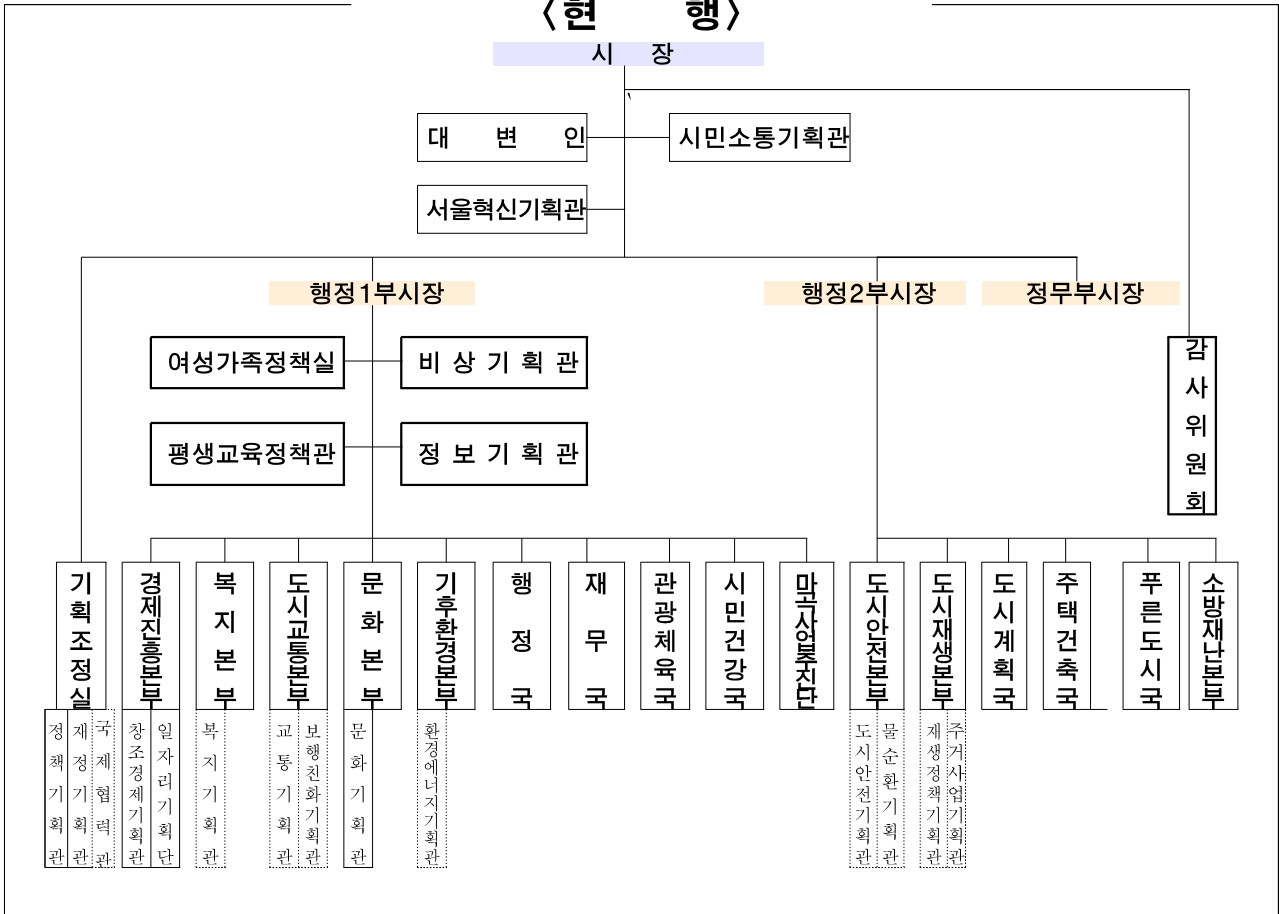
조직체계 구성 : 1실 8본부 8국 2합의제행정기관

| 구분 | 기존 | 기능구분 | 개편 전후 비교 | |
|----|----|------|----------|-----|
| | | | 현행 | 개편안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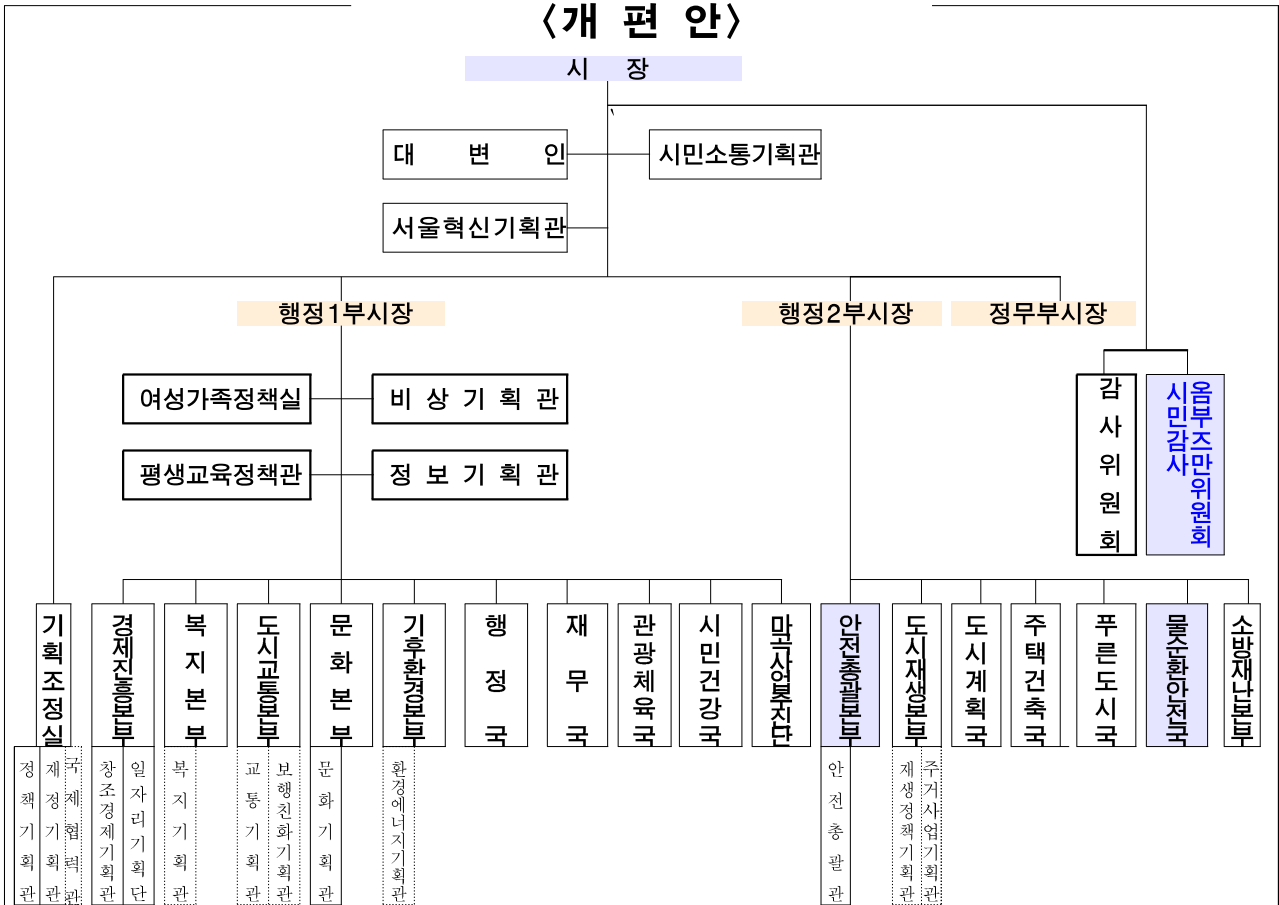
1) 2015년 4월 7일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재난안전관련 1, 3급 각 1명씩을 증원한 사항

| | | | | |
|-----------|------|---|--|---|
| 실 | 1급 |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총괄조정 | 【1실】 기획조정실 | 【1실】 기획조정실 |
| 본부 | 1·2급 | 다수의 사업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구분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 【8본부】 경제진흥본부(1급) 복지본부(1급) 도시교통본부(2급) 문화본부(2급) 기후환경본부(2급) 도시안전본부(1급) 도시재생본부(1급) 소방재난본부(소방정감) | 【8본부】 경제진흥본부(1급) 복지본부(1급) 도시교통본부(1급) 문화본부(2급) 기후환경본부(2급) <u>안전총괄본부(1급)</u> 도시재생본부(1급) 소방재난본부(소방정감) |
| 국 | 2·3급 | 기능별 책임전담 및 고유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 【7국】 행정국(2급) 재무국(2급) 관광체육국(2급) 시민건강국(2급) 도시계획국(2급) 주택건축국(2급) 푸른도시국(2급) | 【8국】 행정국(2급) 재무국(2급) 관광체육국(2급) 시민건강국(2급) 도시계획국(2급) 주택건축국(2급) 푸른도시국(2급) <u>물순환안전국(2·3급)</u> |
| 합의제 행정 기구 | | | 【1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원회 | 【2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원회 <u>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u> |

〈현 행〉



〈개 편 안〉



나. 주요개편 내용

○ 전문적·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총괄기능 강화

- 시의 재난안전 전반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안전본부'를 물관리분야를 분리하여 '안전총괄본부'로 재편하고, '도시안전기획관'을 안전분야에 대한 보좌기능을 강화해 '안전총괄관'으로 재편함.
- 또한, 안전총괄본부내에 비상시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총괄하기 위한 '상황대응과'를 신설하고,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건설안전과'를 '시설안전과'로 보강해 재편함.

○ 분야별 안전 기능 강화

-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안전기능 강화를 통해 실행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기존의 도시안전본부내 '물순환기획관'을 폐지하고, 치수안전 예방 및 대응기능을 강화한 '물순환안전국'을 독립해 신설하고,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변경함.
- 아울러, 기존 상수도사업본부내 '상수도연구원'을 '서울물연구원'으로 변경해 하수처리 공정 및 하수재이용 등 하수분야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시민의 권익 보호기능 강화

- 시민의 권익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 ‘민원해소담당관’을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전환해 주민감사 및 공공사업 감시활동,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등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 안전분야 외 조직정비를 통한 기능보강 및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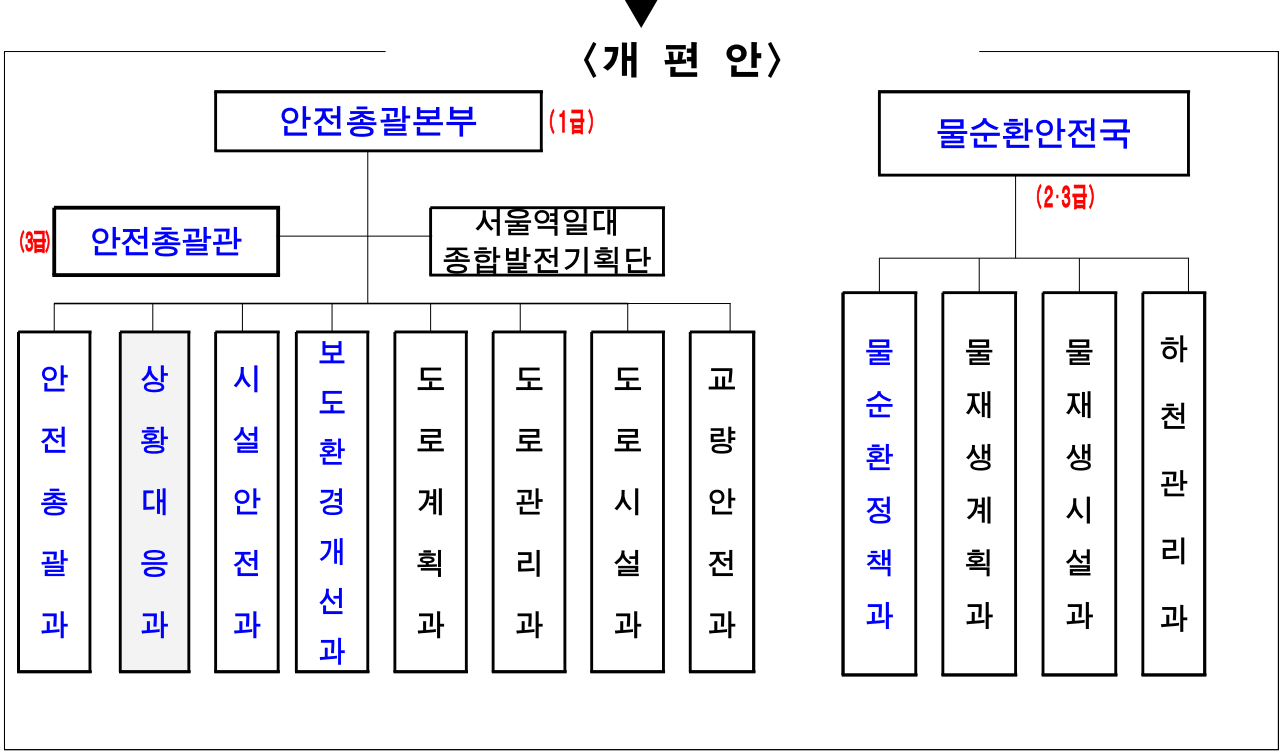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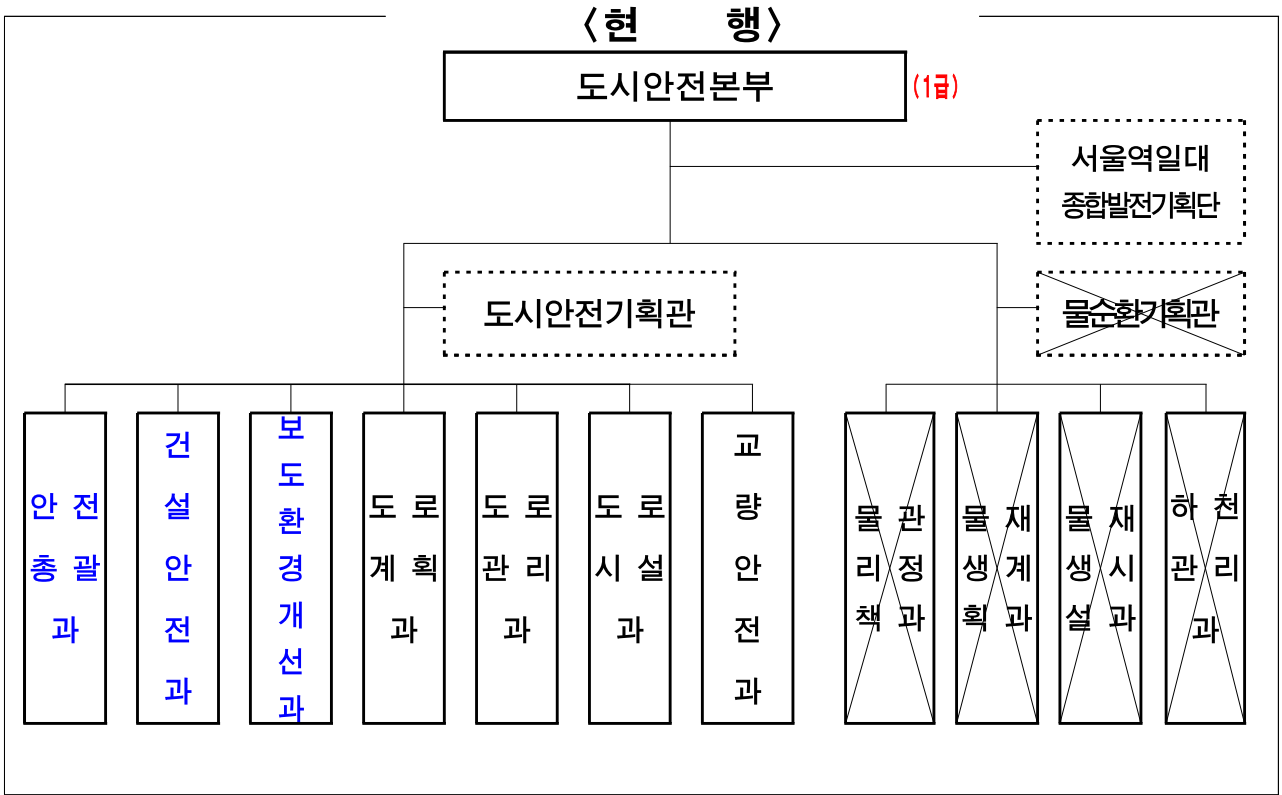
- 도시농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도시농업과’ 신설, 서울형 도시빛정책 추진을 위한 ‘도시빛정책과’ 정규직화, 2016년 개관을 대비한 ‘서울시립과학관’ 신설 등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실·본부·국 직제 조정(안 제4조)

-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 행정사무 분장을 위해 설치되는 실·본부·국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로 조정됨.

다. 분야별 세부검토

1) 안전총괄본부 / 물순환안전국 신설(안 제15조 및 제19조의2)



○ 안 제15조는 기존의 도시안전 업무를 수행하던 ‘도시안전본부 (2기획관 11과)’의 물관리 분야를 분리해 재난안전 총괄·조정

중심의 ‘안전총괄본부(1기획관 8과)’로 개편하고, 안 제19조의2를 신설해 풍수해 저감대책과 사전대비 등 치수안전 예방 및 대응기능을 강화한 ‘물순환안전국(4과)’를 독립·신설함.

- 이를 위해 ‘도시안전기획관’을 ‘안전총괄관’으로 재편해 재난안전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정책·기획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 보강하고, 비상 상황에서 재난안전 상황을 총괄하는 ‘상황대응과’를 신설하며,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리를 총괄하는 기존의 ‘건설안전과’를 ‘시설안전과’로 보강·재편하였음.
- 이는 기존의 도시안전본부가 각종 도시안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조직의 규모나 역할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재난안전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을 담당할 대응성이 강화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또한, 독립·신설되는 ‘물순환안전국’은 도시 안전문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풍수해, 하수, 하천, 물순환 등 물관리 분야 전담조직으로서 치수안전 예방과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기존의 도시안전본부가 안전총괄, 건설안전, 도로관리와 교량 안전은 물론이고, 물관리정책, 물재생, 하천관리 등 지나치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정책 결정과정의 지연과 실행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난안전 총괄·

조정 기능과 치수안전 예방 및 대응성 강화를 위한물관리조직의 분리는 각종안전 총괄기능의 강화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사업소 기능보장 및 신설(안 제56조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

- 안 제56조는 상수도사업본부내 ‘상수도연구원’을 ‘서울물연구원’으로 변경해 기존의 상수도분야외에 하수처리 공정이나 하수재이용 등 하수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또한, 안 제113조부터 제115조에서는 현재 노원구 한글비석로 일대에 건립중인 서울시립과학관의 개관을 대비해 과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립과학관’을 신설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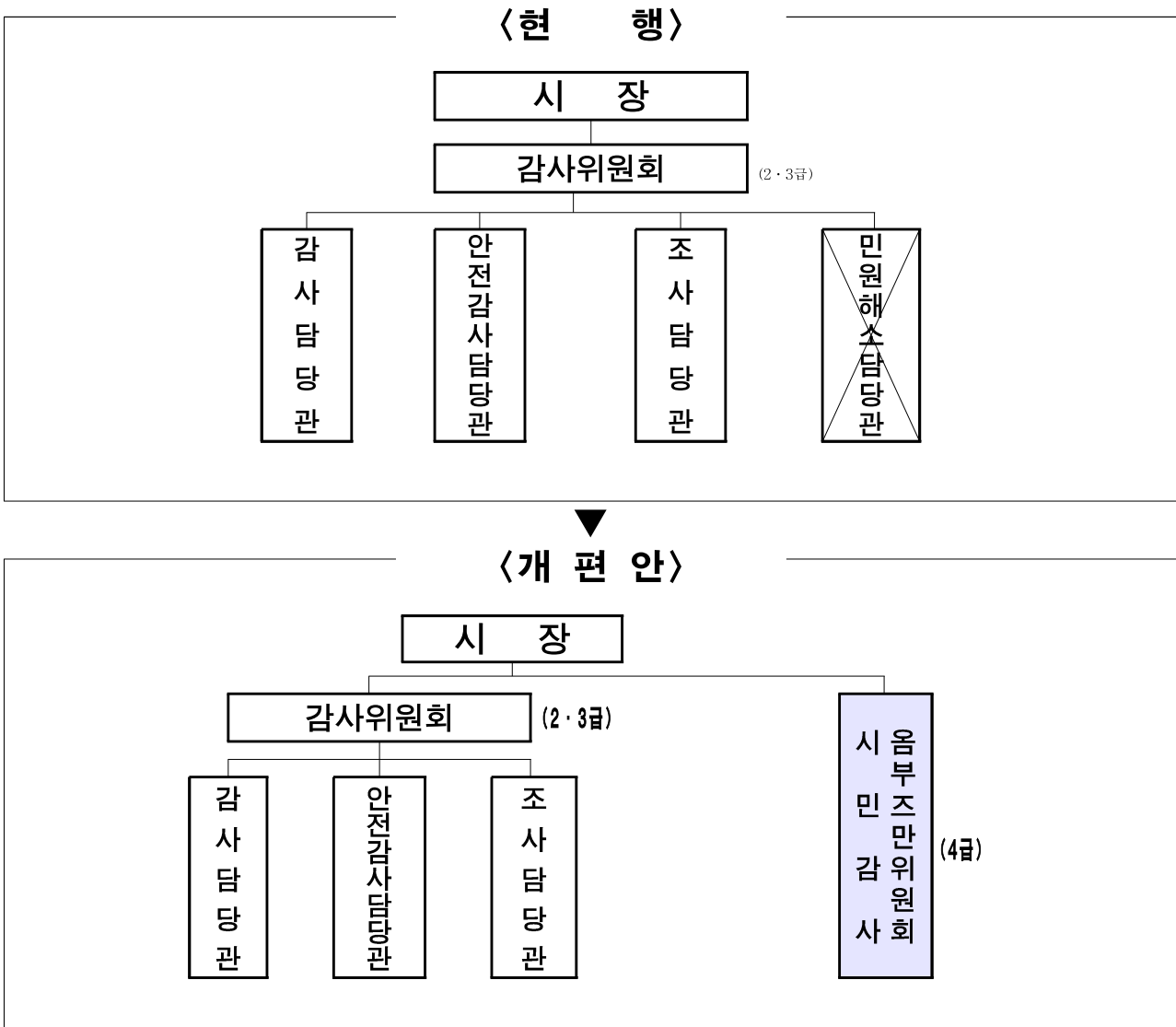
※ 서울시립과학관 건립개요

- ▶ 위치/규모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 / 연면적 12,330㎡
- ▶ 건축기간 : ‘14.1 ~’16.5(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14.6~’16.6)

- 기존의 상수도연구원의 기능에 하수처리를 비롯한 하수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상·하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물분야 연구의 집적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변경되는 ‘서울물연구원’이 여전히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조직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직간의 이질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2).

- 2016년 5월 개관을 대비해 신설되는 ‘서울시립과학관’의 경우에도 당초 구상하고 있는 과학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조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신설(안 제119조부터 제121조)



2) 일부에서는 하수도연구원의 별도 설립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안 제119조 이하는 ‘감사위원회’ 산하의 ‘민원해소담당관’을 대신해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신설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보호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시는 지난 4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³⁾에 따라 감사의 공정성 강화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감사관’을 대신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조례의 제정을 마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 이와 함께 기존의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원조직인 ‘민원해소담당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전환해 주민감사청구, 시민감사청구, 고충민원 조사 처리 등 시민의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합의제행정기관 설치를 통해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

3)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즈만 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사정을 고려한 주의깊은 조직운영이 요구됨.

4)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시는 시정운영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마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행자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운영중인 마곡사업추진단과 일자리기획단의 존속기한이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존속기한은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⁵⁾.
- 현재 운영중인 2개의 한시기구는 2013년 7월 설치되면서 행자부로부터 2년의 존속기한을 부여받았고, 최근 1년의 존속기한 연장을 받아 2016년 6월 법령에 정한 존속기한을 채우게 되는 만큼 해당 업무의 조정과 조직 변동 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⁵⁾.

4) 2015년 6월 10일 행정자치부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6년 1월까지로 1년 연장하도록 통보하였음.

5) 관련규정에 따라 한시기구에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히, 행정자치부가 기한연장 결과를 통보하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3급 기구수가 확대될 경우 일자리 기획단을 상시기구로 상계 조정하고,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 임의 행정기구의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을 협의 조건으로 통보한 사정을 고려해 법령 기준에 맞는 조직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5) 기타 조직개편 사항(안 제6조 등)

- 시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농업과’를 신설하고, 도시계획국내 도시빛정책추진반을 ‘도시빛정책과’로 정규조직화하여 야간 조명관광 개발이나 빛공해 저감대책, 2016년에 예정된 국제도시조명연맹 총회 개최 등에 대비하고자 함.
- 도시농업과 빛 공해 등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는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감과 대응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도시농업 활성화라는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진흥본부내에 이미 11과(추진반 1 포함)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개과가 신설될 경우 조직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라. 종합 의견

- 시·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진행되는 금번 시의 조직개편은 안전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안전분야별 안전기능 강화를 통한 실행중심의 분야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서비스 수요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아울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신설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재난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총괄기능의 보강이나 체계적 안전 관리에 필요한 분야별 조직의 안전기능 강화 등은 도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됨.
- 아울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립과학관’ 신설 등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능보강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최근 몇 차례 조직개편이 반복되면서 자칫 조직 개편이 시민의 이해나 관심과 상관없이 조직 내부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의 피로감이 증가하지 않는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아울러,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3급이상 소속기관의 운영과 달리 임시기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개편 이후에도 7개의 임시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해소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인사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한 적절성 판단과는 별개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와의 협의없이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국장급 기구를 신설해 승진인원을 늘리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⁶⁾.

【 서울시 3급 이상 기구현황 】

| 구분 | 운영 기구수 | 정규 기구수 | 초과 임시기구수 |
|------|--------|---|-------------|
| 개편 후 | 58개 | 51개 ▷ 실·본부·국 : 17개 ▷ 보좌기구(한시기구 2 포함) : 15개 ▷ 의회사무처장 : 1개 ▷ 소속기관 : 17개 ▷ 합의제행정기관 : 1개 | 7개 |

※ 시는 2015년 하반기 승진계획을 통해 설치 근거가 없는 7개의 임시 기구를 해소하지 않은 채 4급에서 3급 승진인원을 8명으로 발표하였음.

6) 감사원(2015.4)는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기구설치 권한이 없는 부서(인사과)가 시장결재를 통해 조직담당관과 협의없이 법령의 규정에도 없는 기구(도로포장개선단, 동남권 MICE 추진단, 행복4구 추진단 등)를 신설해 국장급 승진인원을 늘린 사실을 지적한 바 있음.

【 초과기구 현황(9개)】

| 구분 | 임시기구 명칭 | 소 속 | 비 고 |
|----------------------|-----------------|-----------|------|
| 기획관(임시) (9개 → 7개) | 국 제 협 력 관 | 기획조정실 산하 | |
| | 복 지 기 획 관 | 복지건강본부 산하 | |
| | 교 통 기 획 관 | 도시교통본부 산하 | |
| | 보 행 친 화 기 획 관 | 도시교통본부 산하 | |
| | 환 경 에 너 지 기 획 관 | 기후환경본부 산하 | |
| | 재 생 정 책 기 획 관 | 도시재생본부 산하 | |
| | 주 거 사 업 기 획 관 | 도시재생본부 산하 | |
| | 물 순 환 기 획 관 | 도시안전본부 산하 | 폐지예정 |
| | 도 시 안 전 기 획 관 | 도시안전본부 산하 | 폐지예정 |

-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시의 조직관리가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는 조직담당관과 교육과 산하기관 파견 등을 포함한 현원 관리를 담당하는 인사과로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3급 이상 고위직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인사 부서가 교육과 파견내역 등 세부 정보 노출을 기피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 밖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통해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해 공익과 시민의 이익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나, 시는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단 하루 만에 마감해 시민들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음⁷⁾).

- 행정조직 내부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시민 등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한 보장하지 않은 조치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어려운 조치임을 감안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신설 관련 사항을 삭제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함.

7) 6월 4일 입법예고 후 다음날인 6월 5일 입법예고를 마감하였음.

- 감사위원회 업무에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추가함.

Ⅶ.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572 |
|----------|--------|

제안년월일 : 2015년 6월 3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신설 관련 사항을 삭제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119조~제121조).
- 나. 감사위원회 업무에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추가함(안 제1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21조)을 삭제한다.

안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0.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11.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사업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수정안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5장 합의제 행정기관 제1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u>제113조(생략)</u> <u>제114조(생략)</u> <u>제115조(소관사무) 감</u> 사위원장은 다음 사항 을 관장한다. 1. ~ 8.(생략) 9. 감사사무의 <u>대행</u> 에 관한 사항 10. 주민감사청구 및 <u>시민의 감사청구에</u> <u>관한 사항</u> 11. <u>고충민원의 처리</u> <u>에 관한 사항</u> 12. <u>공공사업 감시·평</u> <u>가에 관한 사항</u> 〈신설〉 | 제5장 합의제 행정기관 제1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u>제116조(현행과 같음)</u> <u>제117조(현행과 같음)</u> <u>제118조(소관사무) 감</u> 사위원장은 다음 사항 을 관장한다. 1. ~ 8.(현행과 같음) 9. 감사사무의 <u>의뢰</u> 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삭제〉 <u>제2절 서울특별시</u> <u>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u> <u>제119조 ~ 제121조</u> <u>〈생략〉</u> | 제5장 합의제 행정기관 제1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u>제116조(개정안과 같음)</u> <u>제117조(개정안과 같음)</u> <u>제118조(소관사무) 감</u> 사위원장은 다음 사항 을 관장한다. 1. ~ 8.(개정안과 같음) 9. 감사사무의 <u>의뢰</u> 에 관한 사항 10. <u>〈현행과 같음〉</u> <u>11. 〈현행과 같음〉</u> <u>12. 〈현행과 같음〉</u> <u>제2절 서울특별시</u> <u>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u> 〈삭제〉 <u>제119조 ~ 제121조</u> <u>〈삭제〉</u>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를 둔다.

제6조제7호 중 “민생침해 근절, 농수산물 유통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민생침해 근절 및 농수산물 유통”으로 하고,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도시안전본부)”를“(안전총괄본부)”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하며, 제1호 중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복구대책의 수립·조정”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조 제3**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예방, 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
3. 시설물 안전관리 조정,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
8.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
4.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제56조제1항 중 “상수도연구원”을 “서울물연구원”으로 한다.

제2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제1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이 절에서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과학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 (하계동)에 둔다.

제114조(관장) 과학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5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존·전시
3.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과학기술지식 보급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를 각각 제116조부터 제118조로 하고, 제118조(종전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 10.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11.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2. 공공사업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상수도연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서울물연구원 | 서울물연구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구의동)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곡사업추진단 및 일자리기획단의 존속기한은 각각 2016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하고, 제31조 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및 별표5 제2호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각각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5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② <u>서울특별시</u>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경제진흥본부·복지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관광체육국·시민건강국·도시안전본부·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푸른도시국·소방재난본부</u>를 둔다.</p> |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② <u>서울특별시</u>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u>를 둔다.</p> |
| <p>제6조(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6. (생 략)</p> <p>7. <u>민생침해 근절, 농수산물 유통 및 도시농업 활성화</u>에 관한 사항</p> <p><u><신 설></u></p> <p>8.~11. (생 략)</p> | <p>제6조(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6. (현행과 같음)</p> <p>7. <u>민생침해 근절 및 농수산물 유통</u>에 관한 사항</p> <p>8. <u>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u></p> <p>9.~12.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p> |
| <p>제15조(<u>도시안전본부</u>) <u>도시안전본부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복구대책의 수립·조정</u></p> <p><u><신 설></u></p> <p>2. <u>건설업 관리</u>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p> <p>3.~6. (생 략)</p> | <p>제15조(<u>안전총괄본부</u>) <u>안전총괄본부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 진흥</u></p> <p>2. <u>재난예방, 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u></p> <p>3. <u>시설물 안전관리 조정, 건설업 관리</u>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p> <p>4.~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p>7. <u>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u></p> <p>8. <u>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u></p> <p>9. <u>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u></p> <p>10. <u>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u></p> <p>11. <u>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p> <p>12. <u>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u></p> | <p>8. <u>서울역일대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
| <p><u>〈신 설〉</u></p> <p>제56조(하부기관)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8개 수도사업소, 6개 아리수정수센터, <u>상수도연구원</u> 및 수도자재관리센터를 둔다.</p> | <p><u>제19조의2(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u></p> <p>2. <u>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u></p> <p>4. <u>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u></p> <p>5. <u>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p> <p>6. <u>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u></p> <p>제56조(하부기관)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8개 수도사업소, 6개 아리수정수센터, <u>서울물연구원</u> 및 수도자재관리센터를 둔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p>제5장 합의제 행정기관 제1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p> <p><u>제113조(설치)</u> (생략)</p> <p><u>제114조(위원장)</u> (생략)</p> <p><u>제115조(소관사무)</u>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8. (생략)</p> <p>9. <u>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u></p> <p>10. ~ 12.(생략)</p> | <p>제21절 서울특별시립과학관</p> <p><u>제113조(설치)</u>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이 절에서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과학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 (하계동)에 둔다.</p> <p><u>제114조(관장)</u> 과학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u>제115조(소관사무)</u>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u>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2. <u>과학기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존·전시</u></p> <p>3. <u>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과학기술지식 보급</u></p> <p>제5장 합의제 행정기관 제1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p> <p><u>제116조(설치)</u> (현행 제113조와 같음)</p> <p><u>제117조(위원장)</u> (현행 제114조와 같음)</p> <p><u>제118조(소관사무)</u>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u></p> <p>10. ~ 12.(현행과 같음)</p>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별표2】 | | | | 【별표2】 | | | |
| 상수도 연구원 | 상수도 연구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구의동) | | 서울물 연구원 | 서울물 연구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구의동) | |